

광주지방법원 2016. 10. 26 선고 2016나1577(본소), 2016나1584(반소) 판결

[매수청구 · 토지인도 등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16. 10. 26 선고 2016나1577(본소), 2016나1584(반소)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16. 2. 4 선고 2015가단13923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A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B

변론 종결 2016. 8. 24.

판결 선고 2016. 10. 26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. 2. 4. 선고 2015가단13923(본소), 2015가단 21146(반소) 판결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1. 원고

가. 본소 청구취지 및 본소에 대한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 22,900,000원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에 대한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

2.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

원고는 피고에게 전남 담양군 C 목장용지 647㎡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40㎡에 설치된 주택과 같은 도면 표시 ㄴ, ㄷ, ㄹ, ㄱ,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23㎡에 설치된 난실을 각 철거하고, 같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다) 부분 96.28㎡ 토지를 인도하고, 2015. 4. 7.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연 1,4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2면 14행의 "(이하 '이 사건 임대차계약'이라 한다)," 다음에 "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1/3 지분권자인 사실,"을 추가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3면 8행의 "20,000,000원"을 "22,900,000원"으로 변경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3면 11행부터 4면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이 사건 주택 및 난실이 원고의 소유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비닐하우스도 원고의 소유이거나 원고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

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 1) 그러나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철재파이프로 만든 구조물 위에 비닐을 씌운 형태로서 몇몇 기둥이 토지에 박혀 있으나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이고, 이 사건 주택은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것으로서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 않으며, 이 사건 난실은 철재구조물로서 몇몇 기둥이 토지에 박혀 있으나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인 사실이 인정되는바,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, 주택, 난실 모두 비용이 다소 든다고 하더라도 토지에서 쉽게 분리 철거해 낼 수 있는 구조라서 이들을 철거할 경우 쓸모가 없어져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들 모두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.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.

2. 결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최영남

판사윤영석

판사오형석

별지

1) 피고는, 피고의 망부(亡夫)인 D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,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E가 1997. 4.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면서 그 지상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토지의 최후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순차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.